

2021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안내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 천톤이상&CMR(~'21년), 100~천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
-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21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동 안내문은 2021년 지원사업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사업별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1년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물질(협약체) 및 중소기업
-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조기확보 필요 물질(천톤미만)

□ 신청방법

- (신청대상) 협약체 대표자 또는 기업(※사업별 세부내용 참조)
- (신청기간) 사업별 신청시기에 맞춰 개별 공고(※사업별 세부내용 참조)
-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
 - 사업별 메뉴에 접속하여 신청서류 제출
-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적용
 - 지원대상 선정결과는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산업계 도움센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 내 게시
 - ※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 사업내용

구분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시기	담당기관
유해성 자료 지원	① 유해성시험 자료 생산 지원	정부생산 방식	정부 직접 생산 및 사용승인	'21년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물질	평가선정 (중소기업비율 등)	'21.2.15 ~2.26	한국환경 공단
		기업생산 방식	기업 시험자료 생산비용 지원	'21년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물질	평가선정 (중소기업비율 등)	'21.3월 예정	
	② 유해성정보 확인·제공		국내외 유해성 정보 확인·제공	'24년 등록 유예물질	정부선정	연중	
컨설팅 지원	③ 등록 컨설팅 지원	협업체 지원	컨설팅비 정액 지원(최대톤수 기준)	'21년 등록 완료 물질	선착순	'21.하반기 예정	한국화학 물질관리 협회
		개별기업 지원	컨설팅비 정액 지원(등록톤수 기준)	'21년 등록 완료 중소기업	선착순	'21.하반기 예정	
위해성 자료 지원	④ 노출시나리오 작성 지원		노출평가 필요 정보 조사·확인	제조·수입자 하위사용자	평가선정 (등록톤수, 기업규모 등)	'21.3월 예정	
전과정 지원	⑤ 등록 전과정 지원		등록비용 지원 (최대톤수 구성원수) * 사업134 총괄지원	'24~'30년 등록유예물질	평가선정 (중소기업비율 등)	'21.4월 예정	
교육	⑥ 등록이행 교육		온라인 교육	등록 담당자 (업종별 신청가능)	선착순	'21.3월~10월 예정	

※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확인

□ 유의사항

- 제출서류 미비시 담당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사업에 선정된 협업체 대표자는 구성원에게 반드시 공지하여야 하며 담당기관 요청(추진현황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협업체 비용분담에서 제외해야 함
-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협업체와 계약 또는 계약예정인 컨설팅 기관은 반드시 협회에 먼저 등록해야 함
- ※ 화학물질 등록완료한 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등록된 컨설팅기관 아니어도 신청 가능
-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실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Ⅱ. 사업별 세부 내용

1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지원

□ 지원대상

○ '21년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기존화학물질

- 협의체 내 중소기업 2개사 이상 포함된 물질

지원 제외 대상

- ① 협의체 내 중소기업 1개사 이하인 물질
 - ② 협의체 대표자 미선정 물질
- ※ 정부생산방식과 기업생산방식은 중복신청 불가(신규 지원물질에 한함)

□ 지원내용

○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또는 생산한 비용 지원

- 국내 GLP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등록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항목(최대 35개)에 관한 시험자료

※ 국내 GLP기관 시험가능 역량에 따라 생산 지원항목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방식 및 운영절차

정부생산방식

○ 담당기관 : 한국환경공단(시험과정 모니터링은 협의체 공동으로 추진)

○ 지원방식 : 정부가 국내 GLP 시험기관을 통해 직접 생산

- 시험비용의 30%(협의체 기준)를 사용료로 납부한 후 등록에 활용

※ 단, 개별적으로 활용시 기업별 5%(소상공인 3%) 금액으로 사용승인 가능

○ 운영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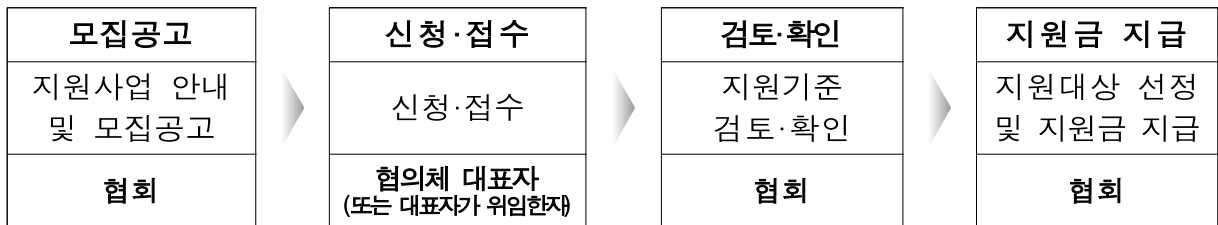
기업생산방식

○ 담당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지원방식 : 기업이 직접 국내 GLP 시험기관을 통해 생산한 비용 지원

- '19.1 화평법 개정 이후 국내 GLP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등록목적으로 생산완료 또는 생산예정인 시험자료 비용의 70% 지원
- 척추동물대체시험방법을 통해 시험자료를 생산한 경우 80% 지원

○ 운영절차



유의사항

- ① 기업생산방식으로 지원 받아 생산된 시험자료의 소유권은 정부와 기업이 분담한 비율에 따라 정부와 공동소유 하며, 공동명의로 저작권을 등록함
※ 정부의 동의 없이 소유권 이전 불가
- ② 협약당사자는 해당 시험자료를 화평법의 등록 및 그 외 활용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으나, 국내 참조권 판매 시 정부지원금은 제외한 비용분담액에 대해서만 판매가 가능함
- ③ 생산지원금은 정부생산방식의 시험항목별 시험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기준 단가를 정하여 지원함
- ④ 시험자료를 생산중이거나 생산예정인 항목에 대해 지원받을 시 GLP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최종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해야하며, 미제출시 지원금 전액 환수

□ 신청 및 대상선정

○ 신청기간

지원방식	신청기간
정부생산방식	2021.2.15.(월) ~ 2.26.(금), 18:00까지
기업생산방식	'20.3월 예정

※ 신청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모집 가능

○ 신청대상 : 협의체 대표자(기업생산방식의 경우 대표자가 위임한자가 신청가능)

○ 신청방법 :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

○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지원방식	
		정부생산	기업생산
1	지원신청서(신청시스템 내 작성)	○	○
2	화학물질 시험자료 생산신청서(CoA 및 MSDS 포함)	○	-
3	시험자료 사전검토 확인서	○	○
4	신청물질 정보기록지	○	-
5	시험자료 생산지원 신청 동의서	-	○
6	협의체 협약서	-	○
7	GLP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최종보고서 (생산 예정 중인 경우에는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함)	-	○
8	시험 계약서(GLP시험기관-협의체)	-	○
9	시험 계획서(생산 완료한 경우에는 제외)		○

○ 선정방법 :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적용

※ (평가기준) 중소기업 비율, 중소기업 수, 최대톤수 비율, 제조업체 비율 등

- 지원대상 선정결과는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산업계 도움센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 내 게시

※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 문의처

지원방식	담당기관	연락처
정부생산방식	한국환경공단(신뢰성보증부)	02-6050-1311~3
기업생산방식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기업지원1팀)	02-3019-6787, 6788

2

유해성정보 확인·제공

□ 지원대상

- '24년 등록유예물질

※ '21년 유예물질에 대한 확인자료는 '20년도까지 기제공(산업계도움센터)

□ 지원내용

- 국내외 화학물질 등록이행 위한 유해성정보를 확인하여 제공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미국, 일본, EU, OECD 등) 유해성 평가보고서에서 공개하고 있는 유해성정보 확인·제공

- 국가 평가보고서 활용지원

- 기존 유해성평가보고서(화평법 적용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유해성평가보고서) 시험항목별 평가내용 확인, 요약서(제출생략서) 작성·제공

활용방안

- 기업이 등록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의 기존시험자료 유무여부, 유해성 사전 확인 및 면제 가능성 판단 시 참고

- 화평법 시행령 제13조 6의2에 따른 자료생략시 제출되어야하는 생략 사유 및 증명자료 작성에 참고

※ 자세한 사항은 시스템 내 주의사항 및 활용가이드 참고

□ 확인방법

- 산업계도움센터(www.chemnavi.or.kr)

- 공동등록 지원사업→유해성정보확인→ 화학물질유해성정보 검색

□ 문의처

담당기관	연락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등록지원팀)	02-3019-6729, 6764

3

등록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 (협약체) 1,000톤 이상으로 대표자가 등록을 완료한 기존화학물질
 - 중소·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 적극적 구성원(Active)인 물질
- (개별기업) '21년까지 기존화학물질 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
 - 등록톤수와 상관없이 '21년까지 등록 완료한 협약체 내 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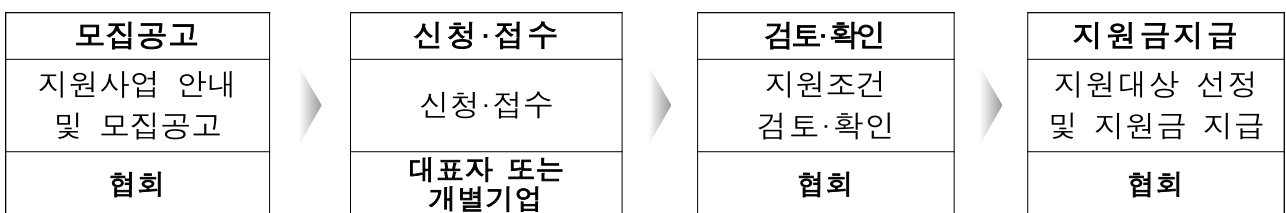
지원 제외 대상

- ① '20년 전과정 또는 컨설팅 지원사업 선정 물질
 ※ 협약체 지원과 개별기업 지원은 중복신청 불가

□ 지원내용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
 - (협약체) 협약체 내 등록 최대톤수에 따라 지원금 정액 지급
 - (개별기업) 개별기업 등록 톤수에 따라 지원금 정액 지급

□ 운영절차



□ 신청 및 대상선정

- 신청기간 : '21년 하반기
- 신청대상
 - (협약체) 등록을 완료한 협약체 대표자(또는 대표자가 위임한자)
 - (개별기업) 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

○ 신청방법 :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

○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지원방식	
		협업체	개별기업
1	지원신청서(신청시스템 내 작성)	○	○
2	지원 신청 동의서	○	-
3	협업체 구성원 정보 및 동의내역	○	-
4	중소·중견기업 확인서(정부기관 발급본)	○	○
5	컨설팅 계약서 1부	○	-
6	협약서 사본 1부 (협약당사자내 중소기업 명단, 지원사업 선정 사실 공유 내용 포함)	○	-
7	화학물질 등록 통지서	○	○

○ 선정방법

-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선착순으로 지급,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대상 선정결과는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산업계 도움센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 내 게시

※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 문의처

담당기관	연락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기업지원2팀)	02-3019-6766, 6799

4

노출시나리오 작성 지원

□ 지원대상

- 화학물질 제조·수입자 및 하위사용자

지원 제외 대상

- ①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 선정 물질(전과정 지원내용에 기포함)
- ② 화평법 제3조에 따른 화평법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
- ③ 화평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등록면제 화학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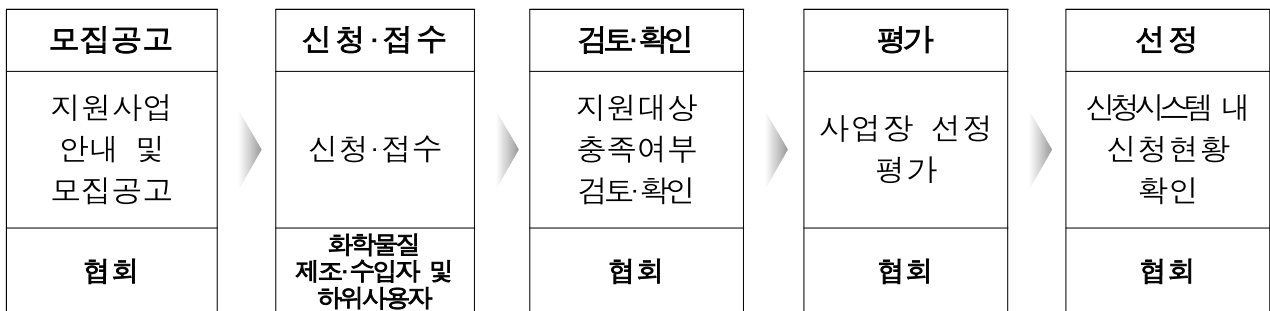
□ 지원내용

- 노출시나리오 작성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

- ①위해성에 관한 자료와 노출시나리오에 대한 설명 및 노출시나리오 기초자료 DB작성방법 안내, ②노출평가에 필요한 정보(용도와 취급공정 확인 등)조사·확인 지원, ③초기 노출시나리오 제공(K-Chesar 양식)

※ 지원결과는 노출시나리오 예시집 개발에 활용되며 향후 산업계에 배포 예정

□ 운영절차



□ 신청 및 대상선정

- 신청기간 : '21. 3월 예정
- 신청대상 : 화학물질 제조·수입자 및 하위사용자
- 신청방법 :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

○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신청시스템 내 작성)
2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참여동의서
3	중소·중견기업 확인서(정부기관 발급분)

○ 선정방법 :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적용

- ※ (평가기준) 취급량, 기업규모, 물질 사용단계(제조, 혼합조제, 사용 등), 소비자 제품 여부 등
- 지원대상 선정결과는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산업계 도움센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 내 게시
- ※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활용방안

- 동 사업을 통해 작성된 노출시나리오는 K-Chesar에 업로드 하여 노출평가를 하고 위해성자료 작성에 활용(10톤이상 제조·수입 물질)
- ※ K-Chesar는 기업에서 쉽게 위해성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고, 상세한 활용안내는 “K-Chesar 안내 홈페이지 (kchesar.kcma.or.kr)” 참조

□ 문의처

담당기관	연락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위해성평가팀)	02-3019-6706, 6786

5 등록 전과정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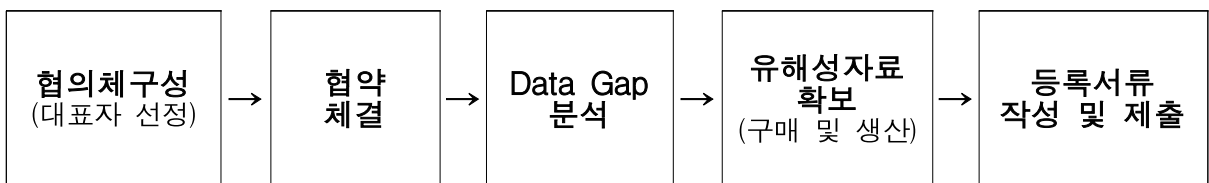
□ 지원대상

- 국가 산업에 중요한 물질로서 유해성정보 조기확보가 필요한 물질
 - '24~'30년까지 유예물질(1톤 이상 ~ 1,000톤 미만)
 - 중소·중견기업이 2개사 이상 적극적 구성원(Active)으로 포함되어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2년 이내 등록하고자 하는 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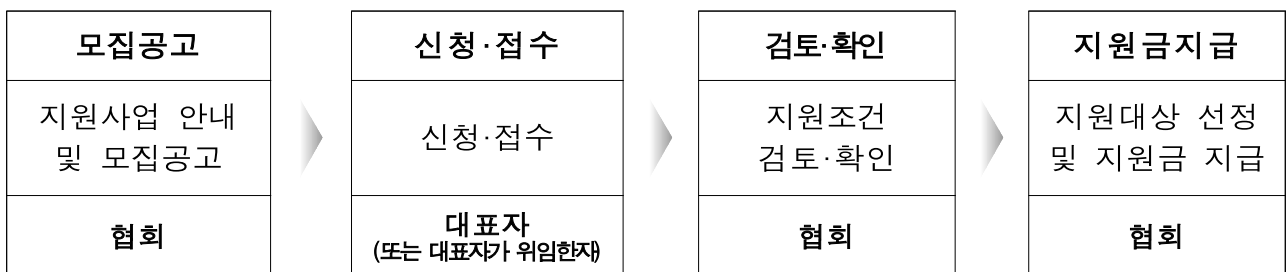
□ 지원내용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비용 지원
 - 협의체 구성(대표자 선정)부터 등록완료까지 전과정 지원
 - ①등록 컨설팅(협의체 구성·운영, 동질성 확인 및 Data Gap 분석, 시험자료 확보방안, CSR자료작성, 용도조사, 등록서류 작성 등), ②유해성 시험자료 생산(기업생산방식 지원), ③노출시나리오 작성 등 지원
- ※ 시험자료 구매비용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협의체 내 대기업과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컨설팅비용 자체 부담

< 공동등록 전과정 지원 절차 >



□ 운영절차



□ 신청 및 대상선정

- 신청기간 : '21. 4월 예정
- 신청대상 : 협의회 대표자 또는 조정자
 - 협의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표자(조정자)가 선정되지 않은 협의회는 구성원 중 동의서를 취합한 자가 신청가능
- 신청방법 :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
-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신청시스템 내 작성)
2	지원 신청 동의서
3	협의회 구성원 정보 및 동의내역

- 선정방법 :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적용
 - ※ (평가기준) 중소기업 비율, 중소기업 수, 최대톤수 비율, 제조업체 비율 등
 - 지원대상 선정결과는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산업계 도움센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 내 게시
 - ※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 문의처

담당기관	연락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기업지원1팀)	02-3019-6787, 6788

6

등록 이행 교육

□ 지원대상

- 화평법 등록 이행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계 담당자

□ 지원내용

- 화학물질 등록 이행에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
 - 비대면 온라인 교육 실시 ※ 코로나19 상황변화시 집체교육 전환 가능
- < 2021년 교육 일정(안) >

과정명		교육일정	교육횟수	인원
계			60회	최대 150명
화평법 공동등록	기본과정	'21.3 ~ 10월 (7, 8월 제외)	12회	
	실무과정		12회	
	전문과정		12회	
고분자 등록과정			12회	
위해성자료 작성과정			12회	

※ 교육 세부일정(과정, 일정, 횟수 등)은 운영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업종별 특화교육 실시

- 협·단체별로 수요조사를 통해 교육 개설 가능
 - ※ 같은 업종, 비슷한 물질 취급하는 업체들의 애로사항 해소 및 교육 효과 극대화
- 교육 일정에 맞춰 별도 수요조사 예정

□ 신청 및 대상선정

- 신청기간 : '21. 3월 ~ 10월(과정별 2회씩 실시/월)
 - ※ 교육과정 운영 전날까지 선착순 접수(과정당 150명내외)
- 신청방법 :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

□ 문의처

담당기관	연락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기업지원1팀)	02-3019-6787, 6788